

# 社團法人 大韓建築學會 定款

(1971年 4月17日 制定)  
(1974年 6月12日 改正)  
(1977年 5月26日 改正)  
(1978年 6月 9日 改正)  
(1979年 5月30日 改正)  
(1981年 5月26日 改正)  
(1983年 6月11日 改正)  
(1987年 11月12日 改正)  
(1989年 5月10日 改正)  
(1991年 5月30日 改正)  
(1992年 6月12日 改正)  
(1995年 11月22日 改正)  
(1997年 12月17日 改正)  
(1999年 5月17日 改正)  
(2001年 8月21日 改正)  
(2003年 9月16日 改正)  
(2005年 8月 3日 改正)

## 第1章 總則

第1條 (名稱) 本會는 社團法人 大韓建築學會(영문명 :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라 稱한다.

第2條 (目的) 本會는 建築에 관한 學術·藝術·技術을 研究 研磨하고 建築인의 地位向上과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함으로써 建築文化 暢達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本部住所地) 本會는 本部를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4條 (支會設置) 本會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本會 所在地 以外에 必要한 支會를 둘 수 있다.

第5條 (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建築에 관한 調査·研究指導 및 이에 關聯된 事業
2. 會誌, 論文集, 研究報告書 其他 建築에 관한 圖書의 刊行
3. 建築에 관한 講習會·講演會·懇談會·展覽會·見學會 等の 開催
4. 建築에 관한 計劃·監督 및 技術檢討에 대한 國家 公共機關 其他 依賴에 관한 事項
5. 國內外 關係 諸學會와의 交流 및 會議參席
6.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 第2章 會員 및 會費

第6條 (會員區分)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이 4種類로 區分한다.

1. 正 會 員
2. 準 會 員
3. 名譽會員
4. 特別會員

第7條 (會員資格) 各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 ① 正會員은 다음의 資格 中 하나를 具備하고 理事會가 承認한 者
  1. 正規大學에서 建築 및 建築關聯 分野를 專攻하여 卒業한 者

2. 專門大學에서 建築系統學科를 卒業하고 建築分野 實務經驗 2年 以上인 者
3. 準會員으로서 2年 以上 經過한 者
4. 建築系統의 碩・博士 學位課程에 入學한 者

② 準會員은 다음의 資格 中 하나를 具備하고 理事會가 承認한 者

1. 專門大學(2年制)에서 建築系統學科를 卒業한 者
2. 正規大學의 建築系統學科를 2年 以上 修了한 者

③ 名譽會員은 建築系統 및 이에 關聯된 科學技術分野에서 學識과 德望이 卓越한 者 또는 本學會 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内外國人 中에서 理事會의 議決로 推戴한다. 名譽會員은 會員이 갖는 모든 權利를 가지며 入會金 및 會費를 免除받는다.

④ 特別會員은 建築에 關係있는 個人 또는 團體로서 本會의 目的을 贊同하는 者 中 理事會의 議決로 選定된 者

第8條 (會費) ① 會員은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일단 納付한 會費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會員의 入會金과 會費 金額은 運營規程에 依한다.

② 本會 正會員으로서 35年 以上 會費를 納付한 會員은 以後 會費를 免除한다.

③ 本會의 會費는 다음과 같다.

入 會 金

正 會 員 會費

準 會 員 會費

特別會員 會費

終身會費

第9條 (懲戒 또는 除名) 本會 會員으로서 本會의 定款을 違反하거나 本會의 名譽를 毀損시키는 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議決로 懲戒 또는 除名할 수 있다.

第10條 (資格停止 및 喪失) 本會의 會費를 2年 以上 納付하지 않은 者는 會員資格이 停止된다. 資格停止 發效日 以後 滿 2年內에 滯納會費의 納付로 會員資格이 復歸된다. 但, 資格停止 發效日 以後 2年이 經過한 者는 自動的으로 除名된다.

第11條 本會 會員 中 本會를 脫會하고자 하는 者는 會員辭退書を 本會 事務局에 提出함으로써 脫會된다. 또한 本人死亡은 脫會로 본다.

### 第3章 任員, 職員 및 部署

第12條 ① (任員의 資格 等) 任員의 資格은 任員選出規程에서 定한다.

② (任員의 定員) 本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 長 1名
2. 副 會 長 7名
3. 支 會 長 8名
4. 理 事 53名(非登記 任命職副會長 2名 및 理事 10名 包含)
5. 參與理事 正會員의 2% 以內
6. 監 事 2名

③ (任員의 性格) 各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④ (會長의 職務)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와 代議員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⑤ (副會長의 職務)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副會長 中 年齡順에 依하여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⑥ (支會長의 職務) 支會長은 該當 支會를 代表하며, 理事會 및 擴大理事會를 通하여 會務에 參與한다.

⑦ (理事의 職務) 理事는 理事會 및 擴大理事會를 通하여 主要會務의 議決에 參加한다.

⑧ (參與理事의 職務) 參與理事는 擴大理事會를 通하여 學會 主要會務의 議決에 參加한다.

⑨ (監事の 職務) 監事は 會計事務를 監査하며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하고 理事會 및 擴大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⑩ (任員의 選出)

1. 會長, 副會長 5名(選出職), 參與理事 및 監事は 代議員會에서 選出한다.

2. 副會長 2名(任命職) 및 理事는 會長이 選任하여 總會의 一括認准을 받는다.

⑪ (會長 및 副會長의 任期) 會長 및 副會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重任하지 아니한다. 다만, 任命職 副會長의 任期는 1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⑫ (參與理事, 理事 및 監事の 任期) 參與理事의 任期는 終身으로 한다. 理事 및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하며 3回 以上 連任하지 아니한다. 缺員으로 補選된 理事의 任期는 먼저 任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⑬ 任期가 滿了된 任員은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擔當한다.

第13條 (名譽會長의 推戴) 會長은 會長을 歷任한 元老參與理事를 理事會의 議決 및 總會의 認准을 얻어 名譽會長으로 推戴할 수 있다.

第14條 (部署) 本會에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두되 部署別 擔當理事 및 幹事を 會長이 委囑한다.

① 總務部 : 本會의 一般事務에 관한 事項, 事務經理에 관한 事項, 其他 他部에 屬하지 않는 事項

② 研究1部, 研究2部 : 學術 및 技藝의 研究 調査에 관한 事項

③ 支會部 : 支會 運營 및 支援에 관한 事項

④ 事業部 : 啓蒙, 宣傳 및 刊行 目的에 따른 諸事業에 관한 事項

第15條 ① (事務局) 本會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內에 有給職員 若干名을 두되 理事會의 議決로 會長이 任命한다. 職員은 會長, 副會長, 各 擔當理事의 指導下에 事務를 分擔한다.

② (附設機關) 本會에 다음과 같은 附設機關을 둘 수 있다.

1. 建築研究所

2. 出版部

3. 建築情報센터

## 第4章 代議員

第16條 (代議員의 構成) 代議員은 當然職代議員과 選出職代議員으로 構成한다.

第17條 (代議員의 選出) 當然職代議員은 前會長, 會長, 副會長, 監事 및 支會長이 되며, 選出職代議員은 當然職代議員을 除外한 正會員 60人當 1人의 比率로 選出하되 超過分은 別途의 1人으로 認定한다.

第18條 (選出職代議員의 資格) 本學會 入會 後 10年 以上 經過한 正會員은 選出職代議員으로 被選될 資格을 갖는다.

第19條 (選出職代議員의 任期) 選出職代議員의 任期는 滿 2年으로 하고, 缺員이 생겼을 때 補選하지 않는다.

第20條 (代議員 選出에 관한 細部事項) 代議員의 選出時期와 方法, 代議員 選出資格 等에 관한 細部事項은 理事會가 따로 定한다.

## 第5章 會議

第21條 (會議의 種類) 本會 會議에는 總會(定期總會, 臨時總會), 代議員會, 理事會, 擴大理事會 및 諮問會議을 둔다.

第22條 (總會의 召集 等) ① 定期總會는 會長이 年 1回 召集하며 7日 以前에 그 會議 目的事項을 明示하여 通知하여야 한다.

② 定期總會는 委任者를 包含하여 在籍 正會員의 50分の 1 以上으로 成立한다.

③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 이를 召集하며, 理事會 및 擴大理事會의 會議召集議決이 있거나 會員 150名 以上이 連署하여 會議召集 要求가 있을 때에는 召集要求書를 接受한 날로부터 20日 以內에 會長은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23條 (代議員會) ① 代議員會는 總會 前에 開催하며, 在籍代議員의 3分の 1 以上이 會議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20日 以內에 召集하여야 한다. 또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判斷될 때에는 召集할 수 있다.

② 代議員會의 議長은 會長이 된다.

③ 代議員會는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되며 議決은 出席代議員 過半數로 決定한다. 다만, 任員選出을 爲한 代議員會의 議決에 대한 細部事項은 別途 規程으로 定한다.

④ 監事는 代議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24條 (理事會 및 擴大理事會) ① 理事會는 會長・副會長 및 理事의 過半數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한다.

② 擴大理事會는 會長・副會長・參與理事 및 理事의 5分の 1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한다.

③ 理事會는 年 6回 以上, 擴大理事會는 年 2回 以上 會長이 召集하며, 理事會 또는 擴大理事會 構成員의 5分の 1 以上이 連署하여 會議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長은 要求가 있는 날로부터 20日 以內에 臨時理事會 또는 臨時擴大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25條 (諮問委員會) ① 政府의 建築關聯 政策 및 學會運營과 關聯하여 會長을 諮問하기 위한 諮問委員會를 둔다.

② 諮問委員會는 前任會長으로 構成하며, 每分期마다 會議를 召集한다.

第26條 (議決) 總會, 理事會, 擴大理事會 및 諮問會議에서의 議事는 多數決로 議決한다.

第27條 (總會의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① 定款의 改廢 및 變更에 관한 認准

② 基本資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에 관한 認准

③ 任員의 認准

④ 事業計劃의 承認

⑤ 豫算 및 決算의 承認

⑥ 其他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28條 (代議員會의 議決事項) 代議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 ① 定款의 改廢 및 變更에 관한 事項
- ② 任員(會長, 選出職副會長, 參與理事, 監事)의 選出
- ③ 基本資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에 관한 事項의 審議
- ④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 ⑤ 其他 主要事項

第29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 ① 諸規程 및 運營細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 ② 事業計劃의 決定 및 變更에 관한 事項
- ③ 會員의 除名懲戒 및 權利行使에 관한 事項
- ④ 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事項
- ⑤ 褒賞者 決定에 관한 事項
- ⑥ 總會 및 代議員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 ⑦ 其他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30條 (擴大理事會 議決事項) 擴大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① 學會運營에 관한 事項
- ② 政府의 建築關聯政策에 관한 事項
- ③ 其他 會長이 上程하는 事項

第31條 (議事錄의 保管 等) ① 總會, 代議員會, 理事會 및 擴大理事會의 會議錄은 會長・副會長 및 擔當理事가 署名捺印하여 5年동안 事務局에 保管한다.

② 總會, 代議員會, 理事會 및 擴大理事會 開催結果는 會議錄 寫本을 添附하여 2週日 以內에 建設交通部 長官에게 報告한다.

## 第6章 資産 및 會計

第32條 (資産의 構成) 本會의 資産은 다음 項目으로 構成한다.

- ① 基本資産
  1. 會館垜地 및 建物
  2. 基本資産으로 指定 寄附된 贊助金 및 物件
  3. 通常資産 運營에서 생긴 收益金, 債券 등 有價證券 및 物件 中 總會에서 基本資産으로 編入을 議決한 資産
- ② 通常資産
  1. 會員이 納付한 入會金 및 會費
  2. 贊助金과 贊助 받은 物件
  3. 基本資産에서 생긴 收益
  4. 各種 事業活動에서 생긴 收益
  5. 其他의 收入

### ③ 其他資産

1. 什器, 備品 등
2. 會務資料, 記錄物, 資料 및 資産目錄 등 有・無形 資料性質의 資産
3. 特許權 등 知的財産權
4. 基本資産 및 通常資産 以外の 資産

第33條 (基本資産의 造成) 基本資産을 造成하기 爲하여 每年度 決算移越金の 1割 以上을 積立할 수 있다.

第34條 (其他資産의 範圍) 其他資産의 範圍는 別途의 內容基準을 定하고 이에 따라 登載된 것으로 한다.

第35條 (經費) 本會의 經費는 通常資産으로써 充當한다.

第36條 (資産의 管理) 基本資産의 管理方法은 理事會에서 定하고 本會의 모든 資産은 會長이 이를 管理한다.

第37條 (特別會計) 必要한 境遇에는 理事會의 議決를 거쳐 特別會計를 設置할 수 있다.

第38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1일부터 翌年 3月31일까지로 한다.

## 第7章 支會 및 國外地域 幹事

第39條 (支會의 構成) ① 支會는 該當 市道 및 外國에 設置할 수 있다.

② 支會構成은 該當地域에 居住하는 正會員 100名 以上으로 한다. 다만 이미 設置된 支會는 例外로 한다.

③ 會員은 勤務地 當該地域 支會에 所屬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40條 (支會任員) 支會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둘 수 있다.

1. 支會長 1名
2. 副支會長 若干名
3. 評議員 若干名
4. 幹事 若干名
5. 監事 1名
6. 分科委員長 若干名

第41條 (支會任員의 選出) 支會의 任員은 支會規約에 따라 選出하고 支會長 및 支會幹事は 支會의 推薦을 거쳐 會長이 認准한다.

第42條 (支會長의 義務) ① 支會長은 每年 3月에 任員名單, 會員名單, 前年度의 會計報告書와 監事報告書를 本會 會長에게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② 支會長은 會員의 移動이 있을 때는 即時 本會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43條 (支會의 義務) 支會는 本會의 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을 履行할 義務를 갖는다.

第44條 (支會規約) 支會規約은 支會가 作成하되 本會 定款에 違背되지 않아야 하며, 本會 理事會에서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45條 (支會運營) 支會運營은 支會에 所屬하는 通常資産으로 充當한다. 支會의 通常資産 中 本會에 納付하는 比率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46條 (支會總會의 參席) 支會總會時에는 本部에서 會長, 副會長 中 1人이 參席한다.

第47條 (國外地域 幹事) ① 支會가 設置되지 않은 國外地域의 會員을 爲하여 그 地域에 國外地域 幹事를

둘 수 있다.

② 國外地域 幹事は 그 地域駐在 正會員 中에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任命한다. 國外地域 幹事の 任期는 本會任員과 같다.

③ 國外地域 幹事は 毎年 3월에 所屬會員 名單을 本會 會長에 報告하여야 하고 會員의 移動이 있을 때는 即時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第48條 (國外地域 幹事の 權利) 國外地域 幹事は 本會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開陳할 수 있다.

## 第8章 定款變更과 解散

第49條 (定款變更) 本會 定款의 改廢 및 變更은 代議員會에서 出席 代議員의 2/3 以上の 同意를 얻어 議決하고, 總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第50條 (解散) 本會가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出席 正會員의 3/4 以上の 同意를 얻어 登錄撤回에 따른 主務官廳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51條 (資産의 處理) 本會가 解散할 때의 殘餘資産은 總會의 議決에 依하여 處理한다.

## 附則

1. 本會 定款의 未詳한 것은 規程으로 定한다.
2. 第27條의 1項과 2項은 主務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3. 舊定款下에 登錄된 會員 및 選出된 任員은 本 定款이 發效되는 날 本定款下에 登錄된 會員 및 選出된 任員으로 본다.
4. 本 定款은 1971年 4月 17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 附則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4年 6月 12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7年 5月 26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8年 6月 9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9年 5月 30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81年 5月 26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83年 6月 11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87年 11月 12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89年 5月 10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91年 5月 20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92年 6月 12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95年 11月 22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97年 12月 17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99年 5月 17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단, 第12條 ⑨항의 3호는 2000년 4월 定期總會후 發效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2001年 8月 21日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2003年 9月 16일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2005年 8月 3일부터 效力을 發生한다.